

제33조제2항 전단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원격교육 방식으로 교육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91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를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로, “교습하거나”를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학원”을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1호 각 목에 따른”을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의교습자

제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을 “학원설립·운영자는”으로, “수강료 징수 등을”을 “교습비등의 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와”를 “교습자와”로, “수강료 징수 등을”을 “교습비등의 징수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교습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 ⑥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교습료를”을 “교습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습료”를 “교습비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습료 등”을 “교습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제3항제3호 중 “교습료”를 “교습비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18조의 제목 “(수강료등의 반환 등)”을 “(교습비등의 반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로, “과외교습을 한 자”를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 이하”를 “30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 제5호)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수강료등”을 “교습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5.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시행일의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게 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강사 연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외국인강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습비등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교습비등을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사실 교습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하고,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징수하는 교습비의 편법 인상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자가 학원 등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교습비등”으로 명확히 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규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나.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하게 정의(안 제2조제6호 신설).
- 다.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 마.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15조제3항).
- 바.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사.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아.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 자.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함(안 제23조 제1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 향 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기술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1091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